

울산지방법원 2021. 10. 15 선고 2020가단10546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울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아

피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를

담당변호사 김석환

변론 종결2021. 6. 18.

판결 선고2021. 10. 1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7. 25.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53,820,685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3,820,68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7. 3. 29. 소외 B과 사이에 보증원금 50,000,000원,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, 보증기한 2019. 3. 29.(2020. 3. 27.로 연장됨)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.

나.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,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(원고가 정한 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손해금률은 연 10%이다),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, 채권보전비용 등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.

다.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7. 3. 29. C 주식회사로부터 5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
라. 그런데 2019. 8. 30. B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,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. 2. 19. C 주식회사에게 51,113,241원(= 원금 50,000,000원 + 이자 1,113,241원)을 대위변제하였다.

마. 또한,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합계 484,489원을 지출하였다.

바. 한편,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, 2019. 7. 25.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10163호로 2019. 7. 25.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고(이하 등기원인이 된 매매예약을 '이 사건 매매예약'이라 한다), 2019. 7. 31.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12937호로 2019. 7. 25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(이하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을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,820,6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. 7. 25.에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,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2017. 3. 29.부터 성립되어 있었고,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9. 8. 30.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,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,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,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 성립 여부

갑 제6, 7, 12호증, 을 제5, 6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축탁결과, 이 법원의 C 주식회사, 주식회사 E, F조합, 주식회사 G,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,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. 7. 25. 당시 B의 적극재산은 433,327,000원, 소극재산은 248,911,76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.

<적극재산>

1	이 사건 각 부동산	367,327,000
2	울산 중구 I, J호	66,000,000
합계	433,327,000	

<소극재산>

1	E은행	101,174,366
2	C은행(원고 대위변제)	50,000,000
3	G은행	17,000,000
4	H카드	4,800,600
5	K은행	2,042,149
6	C은행(L카드)	538,648
7	M카드	8,856,000
8	N	64,500,000 1) 2건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로, 일응 채권최고액 합계액(45,000,000원+19,500,000원)으로 산정하였다. 다만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채권최고액 45,000,000원의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은 41,200,000원인 것으로 보여, 실제 채무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이나, 결론에 영향이 없어 채권최고액으로 기재한다.
합계	248,911,763	

따라서, 피고 주장의 피고의 B에 대한 채권 113,150,000원을 포함한다고 하여도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. 7. 25. 당시 B의 소극재산은 362,061,763원(=248,911,763원 + 113,150,000원)이어서,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,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후의 B의 적극재산은 66,000,000원(위 적극재산 순번 제2항)이고, E은행에 대한 채무와 N에 대한 일부 채무를 변제하여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2,737,397원인 사실이 인정되나,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B에게 현금 67,420,834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으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

1	C은행(원고 대위변제)	50,000,000
2	G은행	17,000,000
3	H카드	4,800,600
4	K은행	2,042,149
5	C은행(L카드)	538,648
6	M카드	8,856,000
7	N	19,500,000
합계	102,737,397	

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태홍

별지

1) 2건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로, 일응 채권최고액 합계액(45,000,000원+19,500,000원)으로

산정하였다. 다만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채권최고액 45,000,000원의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은 41,200,000원인 것으로 보여, 실제 채무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이나, 결론에 영향이 없어 채권최고액으로 기재한다.